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상 주 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3,000만원)

※ 지원 한도 외 초과 시 자부담

2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 ~ 10. 16.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yasi01@korea.kr)

다. 접 수 처: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054-537-7239)

라. 제출서류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붙임2)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4) 1부
- ④ (개인) 주민등록 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⑤ 건축물대장 1부
-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
-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 ⑧ 내진성능평가 용역 견적서 1부

3. 사업대상 선정

가. 선정시기 : 2026년 12월

나. 선정방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결과발표 : 개별 통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증빙서류 제출 등) 해야 함.

4. 지원결정의 취소 및 후순위 변경

가. 사업비 과다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자치단체)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자 사업포기 및 지원결정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5. 기타 유의 사항

가. 내진성능평가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지원한도 외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나.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은 상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054-537-7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일정

○ '27년 사업 대상 확정 통보(국회 예산 결정 후) : '26. 12월

붙임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 1】

내진성능 평가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내용	사업명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합계	내진성능평가비용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법인명): (인)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7. 내진성능평가 용역 견적서 1부. 상주시장 귀하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

구 분	내 용	
건축물 명칭		
소 재 지	(새주소)	
소유자 등	성 명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
	주 소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 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내진설계 적용여부* : 해당란에 "○"를 표기

2. 추진계획

가. 소요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7년 12월

☞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

나.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용역 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평가결과* (O, X)	
				성능확보	미확보
용역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예정	년 월 ~ 년 월	※예정금액 기재	※기재생략 가능		

☞ (확인사항)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21.6.10.)에 따라, 인증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를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있는지 확인 필수

3.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계			
내진성능 평가비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행정안전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건물명)

신청인 :

(인)